

학생연구원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가.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나.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 다.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원

제3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가.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나.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마.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가.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 나.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 다.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가.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 나.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 다.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와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나.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 나.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 다. 학생연구원 개인의 사정
- 라.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동서대학교 연구비 및 교외지원사업관리 시행세칙 제18조 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월 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 ②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
- ③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한다.
- ④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총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책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연구 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집행기준) ① 연구책임자는 동서대학교 연구비 및 교외지원사업관리 시행세칙 제18조 인건비 제출서류에 따라 참여연구원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과제담당자는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매월 25일 경에 학생인건비를 집행한다. 단, 참여연구원 등록이 늦어지거나 참여연구원 변경이 있을 경우 학생인건비 지출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및 월별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한다.
- ④ 인건비는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⑤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연구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관리등 금지)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원 1인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개인 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개별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는 등 부당한 학생인건비 유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자체 조사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유용 방지)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이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제19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유용방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학생인건비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보장) 우리 대학교는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우리 대학교는 연구참여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감사실, 감사팀 등 기

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우리 대학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서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동서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